

#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김중오, 함혜현

---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과 바닷물 속에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은 실정 법상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남해안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해운대의 경우 2012년 여름에 1천 364만 명(6월 1일~8월 29일간, 부산시 통계)의 방문객을 기록하였고, 총 18건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성추행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처리되었다. 이는 2011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검거된 범죄 8건보다 10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범죄자 또한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 보고 예방대책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해수욕장 성범죄, 몰래카메라, 성추행

---

## 1. 서론

여름철 피서지의 대명사인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과 바닷물 속에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은 실정법상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의 해수욕을 빙자한 성 관련 범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피서지를 찾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크나큰 심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해안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해운대의 경우 2012년 여름에 1천 364만 명(6월 1일~8월 29일간, 부산시 통계)의 방문객을 기록하였고, 총 18건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성추행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처리되었다. 이는 2011년 해운대에서 검거된 성추행 범죄건수인 8건보다 10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범죄자 또한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 그 중에서도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

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와 관련해서는 2012년 7월~8월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로서 관할기관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성범죄의 원인을 가해자 측면과 피해자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의 특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징을 가해자의 측면과 피해자 측면, 그리고 수사기관의 대응 측면에서 모두 검토함으로써 대책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범죄의 의의 및 유형

성범죄(sex offense)란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제242조), 음화 등의 반포(제243조), 음화 등의 제조 등(제244조), 공연음란(제245조) 등이 있다.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제288조),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제292조) 등이 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강도강간(제339조)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특수강도강간(제3조), 특수강간(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2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는 언어적 폭력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범죄성의 정도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주로 사법기관에서 처벌받는 행위는 비교적 정도가 심한 성적추행과 강간 등의 성폭행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압수율이 높고, 신고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는 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착(性倒錯)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유형 중에 노출증, 여성물건애, 접촉도착증, 소아기호증, 피학증, 가학증, 그리고 관음증 등이 있다(전대양 외, 2011: 214-218).

먼저, 노출증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여성물건애는 여성의 속옷 등을 활용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고, 접촉도착증(frotteurism)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문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껴안거나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가 많지만 성교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피학증은 상대방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음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경우이고, 가학증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서 쾌락을 얻는 것이다.

관음증(觀音症)은 절시증(竊視症) 또는 관찰증(觀察症)이라고도 하며, 피해자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자들은 남성다운 성질이나 강인함이 부족하고 겁쟁이처럼 행동하며,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살인범이나 강도범들보다도 저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Brown, *et. al.*, 2001: 470).

## 2. 성범죄의 의의 및 유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한 이론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가해자 관련 이론

범죄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설명은 범죄생물학적 이론, 범죄심리학적 이론, 범죄사회학적 이론으로 찾고자 하였다.

범죄생물학적 이론은 개인의 신체적이나 생리적인 이상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였고, 범죄심리학적 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범죄사회학적 이론은 사회구조나 체제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서 범죄의 발생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였다(전대양 외, 2011: 77).

최근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생물학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설명으로는 성염색체의 이상, 남성 호

르몬의 과다 등이 있다. 정상적인 성염색체가 여성은 XX이고 남성은 XY인데, 남성의 경우에 XYY 등 특이한 성염체를 보유한 경우에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고(Brown, *et. al.*, 2001: 258), 남성호르몬의 하나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증가는 성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등이 있다(Brown, *et. al.*, 2001: 262).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으로는 정신병이나 신경증, 그리고 성격장애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성격상 문제가 있는 범죄자들은 일상적인 일들을 견디기 힘들어 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전대양 외, 2011: 101).

범죄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사회구조나, 사회화 과정에서 범죄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학습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 있는 설명으로는 음란물의 용이한 접촉과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성장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력의 부족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인 원인의 분석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 2) 피해자 관련 이론

범죄 피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로는 범죄와의 근접성, 범죄에의 노출, 표적의 매력성, 보호능력 등이 거론된다(이운호b, 2007: 31-34).

범죄와의 근접성은 물리적 근접성을 의미하는데, 범죄발생 지역에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범죄에의 노출은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데, 다수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에서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고, 범죄에의 노출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표적의 매력성은 특정한 표적이 범죄자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죄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며, 보호능력은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범죄의 피해가 적게 나타난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서로 면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장석현·이창한, 2010: 417). 그러나 일정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면식이 없는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대인적 범죄나 카메라 촬영 등의 성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armen, 2001: 239), 신고되지 않은 많은 성범죄들은 처벌받지도 않는다. 특히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스치는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부끄러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스러움과 불쾌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언어적 추행보다는 육체적 추행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였으며,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은 그 사실을 잊으려 하거나 가해자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Osman, 2004: 267).

### III.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 분석

#### 1. 범죄발생 현황과 분석

##### 1) 범죄발생 현황

2012년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검거건수는 총 18건이다. 다음은 검거된 성범죄 발생현황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 ① 사례 1: 베트남인의 카메라 촬영

7월 28일 13:30경 베트남인(31세)은 해운대 백사장 자신의 파라솔에서 피해자 2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슴상부, 팔, 복부, 다리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8매를 촬영하였으며, 몰래카메라 촬영(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 ② 사례 2: 베트남인의 동영상 촬영

7월 28일 17:40경 베트남인(41세)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에 섹시함을 느끼고, 피해자 4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슴 상부, 팔, 복부, 다리 등 신체 전반을 동영상(약 20분)으로 촬영하였다.

###### ③ 사례 3: 베트남인의 청소년 강제추행

7월 29일 13:40경 베트남인(30세)은 해운대에서 튜브를 타고 놀던 17세 A여성에게 접근하여 물속에서 가슴부위로 손을 뻗어 비키니수영복 상의 끈을 잡아당기고, 친구인 17세 B여성에게 다가가 수영복 치마 밴드 부분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손바닥으로 만졌고, 튜브가 깊은 수심으로 흘러가자 피해자의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튜브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여성의 비키니 수영복 상의 끈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 ④ 사례 4: 방글라데시인의 청소년 강제추행

7월 29일 14:30경 방글라데시인(34세)은 17세 청소년 2명에게 접근, A피해자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악수를 청하여 손을 잡았으나 피의자가 계속 손을 놓아주지 않자 A피해자가 부담을 느낀 나머지 힘을 주어 뿌리친 뒤 바닷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튜브를 팔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팔을 바닷물 속에 넣어 A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손으로 만졌다. 이후 B피해자에게로 가서 오른팔을 바닷물 속에 넣어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⑤ 사례 5: 미얀마인의 카메라 촬영

7월 29일 15:30~15:00경 미얀마인(34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 9명이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파라솔과 아쿠아리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성 9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진 총 15매를 촬영하였다.

⑥ 사례 6: 인도네시아인의 카메라 촬영

7월 30일 15:30~18:05경 인도네시아인(36세)은 여성 A, B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SONY SLT-A65V)와 망원렌즈(SONY)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피서를 즐기던 불상의 피해자 42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슴 상부, 팔, 복부, 엉덩이 및 다리 등 사진 총 83매를 촬영하였다.

⑦ 사례 7: 베트남인의 강제추행

8월 1일 15:30경 베트남인(27세)은 물놀이를 하던 여성 3명에게 성적매력을 느끼고, 일행들과 조금 떨어져 물놀이를 하던 A여성의 튜브를 뒤집어서 바닷물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든 다음 오른손을 A여성의 핫팬츠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시 B여성의 뒤로 잠수하여 다가가 오른손으로 B여성의 핫팬츠 아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고 다시 양팔로 여성의 허벅지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C여성에게 다가가 핫팬츠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⑧ 사례 8: 한국인의 카메라 촬영

8월 1일 15:10경 한국인(19세)은 비키니 등을 입고 있는 한국 여성 2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⑨ 사례 9: 우즈베키스탄인의 강제추행

8월 2일 13:20경 우즈베키스탄인(31세)은 과도가 심해 A여성의 튜브에 매달려 물놀이를 하던 B여성에게 접근한 뒤 오른손으로 B여성의 비키니 상의 수영복 위로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하였다. 13:50경에는 튜브를 타고 있다가 피의자를 피하려던

A여성에게 다가가 파도가 치는 순간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부터 종아리까지 쓰다듬듯이 훑어서 1회 만지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하였다.

⑩ 사례 10: 방글라데시인의 강제추행

8월 2일 16:20경 방글라데시인(25세)은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A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파도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 양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뺀어 접촉하고, 다시 두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감싸 안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고 튜브를 타고 친구에게 도망가려 하자 다시금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튜브 아래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하였다.

⑪ 사례 11: 우즈베키스탄인의 강제추행

8월 3일 16:15경 우즈베키스탄인(26세)은 파도와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정면 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을 물 밑으로 넣어 파도에 밀려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안쪽을 만지는 것으로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⑫ 사례 12: 몽골인의 강제추행

8월 4일 16:50경 몽골인(22세)은 이안류가 발생하여 해수욕객 입욕 통제작업 중이던 여성 구조대원이 입욕객 통제를 위해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있을 때, 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파도에 넘어지는 척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⑬ 사례 13: 스리랑카인의 강제추행

8월 4일 16:00경 스리랑카인(32세)은 물놀이를 하던 여중생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허벅지와 배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⑭ 사례 14: 스리랑카인의 강제추행

8월 4일 16:00경 스리랑카인(28세)은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튜브를 타고 있던 여중생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같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튜브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물속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하였다.

⑮ 사례 15: 베트남인의 강제추행

8월 4일 17:15경 베트남인(28세)은 피해자 A와 약 1미터의 거리를 둔 채 파도가 치면 피해자가 파

도에 의해 자신에게 밀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어수선한 틈을 타 신체를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때마침 피해자 A가 파도에 밀려 피의자에게로 다가오자 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17:20경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B에게도 접근, 파도가 밀려오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 추행 하였다.

#### ⑩ 사례 16: 우즈베키스탄인의 강제추행

8월 4일 15:00경 우즈베키스탄인(23세)은 피해자가 파도타기 놀이를 하며 수면 위에서 엎드린 채 파도를 맞으며 백사장 방향으로 밀려가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쪽 어깨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 ⑪ 사례 17: 일본인의 카메라 촬영

8월 5일 16:00경 일본인(41세)은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의 줌렌즈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피서를 즐기던 미국인 여성을 포함한 불상의 여성피해자 50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슴 상부, 팔, 복부, 엉덩이 및 다리 등 사진 총 203매를 촬영하였다.

#### ⑫ 사례 18: 한국인의 강제추행

8월 11일 16:20경 한국인 정모(54)씨는 여고생 A와 여중생 B가 튜브를 양손으로 잡은 채 해수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리고 예쁘게 보여 피해자들이 반항하기 어려운 깊은 바닷물 속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웃음을 지으며 “어디 사느냐?”고 말하며 접근하면서 A, B 피해자가 타고 있는 튜브를 5m가량 밀고간 뒤, 발이 바닥에 닿기 힘든 수심까지 들어가 A의 가슴과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이후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을 바닷물 속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 2) 범죄현황 분석

이상의 검거된 범죄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중에서의 성추행이고, 둘째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다. 성추행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과 성인에 대한 성추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몰래카메라 촬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수중에서의 성추행이 12건이고, 몰래카메라 촬영이 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중 성추행의 경우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는 척 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성추행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속사건은 5건, 불구속 사건은 13건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검거건수는 8건에서 18건으로 10건(225%) 증가한 것이며, 구속자는 3명에서 5명으로 2명(167%)이 증가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운대 해수욕장 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소 계		사진동영상 촬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강제추행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검거 건수	18건	18명	6건	6명	4건	4명	8건	8명

##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 1) 가해자 특성

대부분의 성범죄는 범죄자-피해자간에 면식 관계에 있다. 75% 이상이 직장·모임의 동료이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Edwards, et. al., 2012: 25).

그러나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범죄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내국인이 2명, 외국인이 16명이었다. 가해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5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 3명(19%), 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 각 2명, 기타 미얀마·인도네시아·몽골·일본인이 각 1명을 차지하였다.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10대~50대로 다양한데, 10대가 1명(19세), 20대가 7명, 30대가 7명, 40대가 2명, 50대가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 실태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30대에는 강간이 많고, 40대에 강제추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1). 그러나 사례에서는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해수욕장에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피의자 18명중 16명(89%)이 외국인이었으며, 이들 모두가 이주노동자라는 점이다. 참고로 2011년도의 경우에도 검거 피의자 8명이 모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이미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의 공장지역 이주노동자들이 휴가철 동안 집중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 청소년과 여성 피서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대체적으로 대인관계의 기술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박지선, 2012: 189),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이라는 낯선 사회에서 부적응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존감의 상실과 인간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의식이 결여된 채 해수욕장에서 성추행을 일삼고 있었다. 해양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성추행과 몰래

카메라 촬영이 하나의 유희문화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자국에서는 도둑촬영(몰래카메라)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등 법률적·문화적 차이도 외국인들이 쉽게 범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한국의 법률과 문화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것도 범죄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바닷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생겼을 경우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성추행 사범으로 오인되고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1) 피해자 특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학적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공격에서 더 많은 두려움과 낙담을 느끼는 것이다 (Ullman & Siegel, 1993: 121).

이번 사례에서 볼 때,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국인이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3세~31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10대가 12명, 20대가 12명, 30대가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여성이 성추행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특성과 관련하여 18건 중 9건이 같은 또래의 동료 2~3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끼리 놀러온 피서객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성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들은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8년에는 14.4세에서 2009년에는 12.7세로 낮아졌고, 강제추행은 7~13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면식범보다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여성가족부, 2010: 3). 강제추행은 초등학교 정도의 연령대가 표적이 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이들이 신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하였으나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몰래카메라 촬영의 경우는 한명의 범죄자가 40~50명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만 가지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회피할 것인데(Wells & Kracher, 1993: 423), 해수욕장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것이 평범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3. 범죄발생 시간 및 공간적 특성

범죄발생 시간대는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총 18건의 범죄 중 16건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는 인과가 많은 틈을 이용해서 과도에 휩쓸려 넘어지는 척 하며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별로 보면 휴가가 집중되는 7월말에서 8월 둘째 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즉, 7월 28일에서 8월 5일까지 전체 사건의 94%(17건)가 발생하였다. 해수욕장 개장 초기인 7월에는 백사장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많았고, 성수기인 8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바닷물 속에서의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였다.

해수욕장에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범죄자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한 형태의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비교적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범죄의 기회 및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카메라와 망원렌즈 등을 준비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성추행의 경우에도 충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성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계획적인 행동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수사기관의 특성

주택가 등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의 수사는 육상경찰이 담당하지만 해수욕장<sup>1)</sup>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률상 관할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해수욕장을 크게 바닷물과 백사장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바닷물 속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양경찰이 수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점에는 異論이 거의 없으나<sup>2)</sup>, 백사장의 경우 육상경찰이 인지하게 되면 육상경찰 기관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하게 되고, 해양경찰이 인지하게 되면 해양경찰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지방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간에 미리 협의를 통해 관할을 조정하기도 하는데, 바닷가라는 특성상 해수욕장에 관련한 육상경찰보다는 해양경찰에서 전담하는 것이 관례이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2012년 여름에 발생한 해운대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백사장에서의 몰래카메라

1) 이 연구에서는 해수욕장의 범위를 바닷물속만이 아니라, 바닷물과 백사장으로 넓게 해석하고자 한다.

2) 2012년 8월 11일 송정해수욕장 바닷물 속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해운대경찰서 소속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 초동조사를 마친 뒤 해경으로 이첩한 사례가 있다.

3)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해수욕장 치안을 해경이 총괄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함으로써 해수욕장 치안의 주체가 해양경찰임을 암시하고 있다(경상일보, 2012년 10월 16일자, 정치면). 실제로 인천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 등의 경우 백사장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만조시 백사장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육상경찰과 협의하여 해양경찰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피해자의 신고보다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운대 해수욕장 성범죄수사대 수사관 또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들의 자체 인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바닷물 속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의 경우에는 추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인근 해양경찰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혐의자 또는 피의자들은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 또는 현행범체포 등의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신병이 인계된 뒤 조사를 받게 되었다.

#### IV. 해수욕장 성범죄 사건의 시사점

##### 1. 위험집단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마련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이 있는 집단끼리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셀린(T. Sellin)의 문화갈등이론이다(이윤호: 2007, 349). 셀린은 '일차적 문화갈등'과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역이 다른 두 문화 사이의 갈등은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였으며, 한 문화 내에서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는 이른바 세대 차이와 같은 갈등은 이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행하는 범죄들은 일차적 문화갈등에 기인하는 원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해수욕장 성범죄의 대부분이 한국의 법률과 문화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노동자에 의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범인을 무작정 검거하기보다는 범죄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사전계도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해수욕장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의 신체접촉이 자국에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거나 사회문화적으로 일정 정도 용인되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한 사전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 이해시키고 적응해 나가도록 교육적 측면에서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 시부터 출국 시까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법교육 및 한국문화에의 적응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피해자가 되기 쉬운 각종의 위험상황 통제관리 강화

성범죄의 원인은 다양하게 거론되지만, 음란물에 대한 노출 증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문화, 가정의 해체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김혜영·김정미, 2012: 2). 그러나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는 카메라 촬영이나 성추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가시성과 기회의 문제, 그리고 수영복 하나만 걸친 상태에서

신체적 강인함 외에 별다른 보호수단이 없다는 것도 범죄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해수욕장 성범죄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들과 달리 해수욕장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에 부합한 예방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수욕장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비키니 수영복 차림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의 경우 피서지라는 혼잡하고 이완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마저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 하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피해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암행 수사요원들의 감시와 제복경찰관의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바닷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 범죄의 경우 일행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2명 이하의 소수가 해수욕을 하는 곳에서 남성이 단독 혹은 2~3명이 접근하여 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물놀이의 경우에도 많은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이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는 ‘접근성’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이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여기에는 ‘시간적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이 있다(이운호b, 2007: 63-64).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시간대인데, 이러한 시간대에는 범죄자가 몰래카메라 촬영과 성추행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통제전략이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여성들이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때 수치심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하기도 한다(김종오, 2009: 11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해 여성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이 제2, 제3의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3.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에 상응한 강력범죄 대응책 필요 암시

이미 우리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맞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수가 2012년 10월 현재 60만 명을 육박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다수 기업들의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바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률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는 물론, 고용불안, 노사갈등, 기타 가정문제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해 우리국민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성범죄 이외에도 각종의 범죄 유혹에 더욱 쉽게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sup>4)</sup>

실제로 최근 울산공단 내 섬유공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자국보다 높은 임금만을 생각하고 무작정 입국하여 일정한 거처도 없이 하루하루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출신국가별로 집단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퇴근 후 공원에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집단을 이루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지내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일부는 자기 신변보호를 구실로 장검이나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는 물론 소위 ‘묻지마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습관과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해수욕장에서의 성추행을 넘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개인의 미래는 물론 정부의 사회방위 차원에서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5)</sup>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각종의 사회문화적 요인들, 즉 일정한 거처가 없는 피고용자, 집단적으로 배회하는 노동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동남아시아 노동자, 공원 등지의 외국인 노숙자 등 범죄와 관련한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각종의 다문화정책 및 처우개선책도 외국인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안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V. 결론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크게 나누어 바닷물 속에서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추행과, 백사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도촬)이라는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바닷물 속에서의 성추행’은 육상에서의 성폭행(강간)처럼 강력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바닷물 속이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신속히 육지로 도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파도로 인해 신체를 가누기 어려운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태를 가해자가 악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만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7월말에서 8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특정 공간에서 총 18건이라는 적지 않은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해수욕장에서의 성범죄는 사건의 경중

- 4) 해양경찰청 국정감사(2012년 10. 15)에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내 해양수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대한투데이, 2012년 10. 16일자, 사회면).
- 5) 해양경찰이 최근 3년간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2009년 168명, 2010년 274명, 2011년 40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 843명을 분석하면,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 135명, 절도범 62명, 사기 등 지능범 49명, 살인·강간 등 강력범 33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11명(60.6%), 러시아 95명(11.3%), 베트남 50명(5.9%), 인도네시아 38명(4.5%), 필리핀 36명(4.3%) 순이다. 장소는 항구·연안도시·섬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인천일보, 2012년 10. 16일자, 사회면).

을 떠나 피해자학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다수 인과가 집중되는 해수욕장의 특성상 여타 해수욕객들과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고, 과도로 인해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2012년 해운대 해수욕장 성범죄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인 10대가 12명을 차지한 것은 최근 우리사회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과 연계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적은 여학생들의 경우 현장에서 그냥 지나치거나 자신이 당한 추행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 기관에서는 이러한 해수욕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다문화사회를 맞아 해수욕장 성범죄와 같이 외국인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영역을 발굴하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해수욕장 성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수욕장 성범죄 대책과 관련하여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이 ‘관할권’이라는 벽을 허물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관점에서, 상호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해수욕장과 같이 육지와 해상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의 경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인력과 장비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종오. 2009.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97-127.
- 김혜영, 김정미. 2012. 전문가가 성폭력 방지 정책을 진단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19: 1-8.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0.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유형에 따라 범행시간, 장소, 피해자 연령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결과 발표.
- 이윤호a. 2007. 범죄학. 서울: 박영사.
- 이윤호b. 2007.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 장석현, 이창한. 2010. 범죄심리학. 서울: 청목출판사.
- 전대양 외. 2011. 새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형설출판사.
- Edwards, Katie M., Megan C. Kearns, Christine A. Gidycz, and Karen S. Calhoun. 2012. Predictors of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Stability Following a Sexual Assault: A Brief Report. *Violence and Victims*. 27(1): 25-32.

- Karmen, Andrew. 2001.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4th ed. CA: Belmont.
- Osman, Suzanne L. 2004. Victim Resistance: Theory and Data on Understanding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Sex Roles*. 50(February): 267-275.
- Stephen E. Brown, Finn-Aage Esbensen, and Gilbert Geis. 2001. *Criminology: Explaining Crime and Its Context*. 4th 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 Ullman, Sarah E. and Judith M. Siegel. 1993.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Sexual Assault. *Violence and Victims*. 8(2): 121-134.
- Wells, Deborah L. and Beverly J. Kracher. 1993. Justice, Sexual Harassment, and the Reasonable Victim Standar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6): 423-431.

---

**金鍾旼**: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학교폭력과 하위문화이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5), 현재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제범죄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등이다. 논문으로는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11),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2011),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역할 제고 방안”(2011) 등이 있다. 한국공안행정학회 감사,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oxkjo@deu.ac.kr).

**咸慧賢**: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논문: 재범고위험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연구 - 형사사법기관의 공조 방안을 중심으로, 2009)를 받았다. 범죄예방·수사, 범죄심리, 형사사법기관의 공조 등이 주요관심 분야이며, 논문으로는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협력에 관한 연구”(2010), “해적사건 수사상 해경-해군 공조수사 효율화 방안”(2012) 등이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견습합장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를 거쳐, 현재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에 재직 중이다(robham@naver.com).

투 고 일: 2013년 05월 23일

수 정 일: 2013년 05월 28일

게재확정일: 2013년 06월 10일

# A Study on the Characters of Sexual Crime and the Suggestion of Crime Prevention in Swimming Beach

– Focus on the Cases Haeundae Swimming Beach in Busan –

Jong Oh Kim, Hye Hyun Ham

In swimming beach which is pronominal avoiding summer heat during summer season, photographing as hidden camera and body touch inappropriately under seawater against women are criminal behaviors. In Haeundae swimming beach, 13.64 million people visited from June 1 to August 29 in 2012, overall 18 cases were arrested by investigating authorities of Maritime Police Agency about photographing as hidden camera and sexual infamy under seawater. Last year 8 cases were arrested, this year the trend of sexual crime is increasing. Especially foreign criminal is growing up and changing variously since Korea come to near multi culture society fundamentally. This paper analyzed materiality and characteristic of sexual crime occurring particular surface as summer swimming beach and looked around prevention countermeasures.

**Key words:** swimming beach sexual crime, hidden camera, sexual infamy